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산림협력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21일에서 2022년 7월 21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운영팀의 존속기한과 기획운영팀의 운영을 위해 직급 상향한 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1일에서 2023년 2월 1일까지 각각 연장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에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기술직군 정원 3명(8급 2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공업서기 및 방송통신서기 “4”를 각각 “5”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23”을 “124”로 하며, 방송통신서기보 “10”을 “11”로 하고, 통신운영서기 “3”을 “2”로 하며, 기계운영서기 “5”를 “4”로 하고, 통신운영서기보 “3”을 “2”로 하며, 농림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7의2 중 공업서기 및 방송통신서기 “4”를 각각 “5”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23”을 “124”로 하며, 방송통신서기보 “10”을 “11”로 하고, 통신운영서기 “3”을 “2”로 하며, 기계운영서기 “5”를 “4”로 하고, 통신운영서기보 “3”을 “2”로 하며, 농림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1년 2월 1일”을 “2023년 2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1년 2월 1일”을 “2023년 2월 1일”로, “2021년 2월 2일”을 “2023년 2월 2일”로 각각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산림청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1. 수목원조성사업단(존속기한: 2022년 1월 27일)

|                      |   |
|----------------------|---|
| 총계                   | 6 |
| 일반직 계                | 6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 1 |
|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1 |
|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 2 |
| 임업연구관                | 1 |

2. 남북산림협력단(존속기한: 2022년 7월 21일)

|                   |   |
|-------------------|---|
| 총계                | 9 |
| 일반직 계             | 9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
| 행정사무관             | 1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 1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 2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 2 |
| 임업연구관             | 1 |
| 임업연구사             | 1 |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산림청의 기획운영팀은 <u>2021년 2월 1일</u> 까지 존속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br>-----<br>-----<br>----- <u>2023년 2월 1일</u> -----<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5명 중 3명은 <u>2021년 2월 1일</u> 까지 존속하며, <u>2021년 2월 2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행정주사 3명으로 본다.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br>-----<br>-----<br>-----<br>----- <u>2023년 2월 1일</u> -----, <u>2023년 2월 2일</u> -----<br>-----<br>-----.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행         | 개정안        | 증 감 |
|----------------|------------|------------|-----|
| ·              | ·          | ·          |     |
| ·              | ·          | ·          |     |
| 공업서기           | <u>4</u>   | <u>5</u>   | +1  |
| 방송통신서기         | <u>4</u>   | <u>5</u>   | +1  |
| ·              |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 <u>123</u> | <u>124</u> | +1  |
| ·              | ·          | ·          |     |
| 방송통신서기보        | <u>10</u>  | <u>11</u>  | +1  |
| ·              | ·          | ·          |     |
| 통신운영서기         | <u>3</u>   | <u>2</u>   | -1  |
| 기계운영서기         | <u>5</u>   | <u>4</u>   | -1  |
| 통신운영서기보        | <u>3</u>   | <u>2</u>   | -1  |
| ·              | ·          | ·          |     |
| 농림운영서기보        | <u>5</u>   | <u>4</u>   | -1  |
| ·              | ·          | ·          |     |
| ·              | ·          | ·          |     |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              | ·          | ·          |     |
| ·              | ·          | ·          |     |
| 공업서기           | <u>4</u>   | <u>5</u>   | +1  |
| 방송통신서기         | <u>4</u>   | <u>5</u>   | +1  |
| ·              |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 <u>123</u> | <u>124</u> | +1  |
| ·              | ·          | ·          |     |
| 방송통신서기보        | <u>10</u>  | <u>11</u>  | +1  |
| ·              | ·          | ·          |     |
| 통신운영서기         | <u>3</u>   | <u>2</u>   | -1  |
| 기계운영서기         | <u>5</u>   | <u>4</u>   | -1  |
| 통신운영서기보        | <u>3</u>   | <u>2</u>   | -1  |
| ·              | ·          | ·          |     |
| 농림운영서기보        | <u>5</u>   | <u>4</u>   | -1  |
| ·              | ·          | ·          |     |
| ·              | ·          | ·          |     |